

고 발 장

고발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화장길 20 삼영빌딩 2층
02-2039-8361
소장 김유승
담당자 조민지

피고발인:

1. 김관진(전 국가안보실장)
2. 김기춘(전 대통령비서실장)

고발대상 범죄:

피고발인 1, 2 -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

* 현재까지 범죄를 저지른 사실관계가 완전하게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수사를 통해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의 죄를 범했거나 이를 지시·강요한 피고발인 1 또는 피고발인 2 를 처벌해주시요.

1. 피고발인들의 지위

피고발인 1 김관진은 지난 2014년 6월부터 2017년 5월 까지 박근혜 정부의 국가안보실장을 지낸 자입니다.

피고발인 2 김기춘은 지난 2013년 8월부터 2015년 2월 까지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자입니다.

2. 피고발인들의 혐의사실

피고발인들의 범죄혐의는 2017년 10월 12일에 있었던 청와대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브리핑(증거자료 1)을 통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등의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브리핑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위기 관리 기본지침」에는 청와대국가안보실장이 국가 위기 상황의 종합 관리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우리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에서 세월호 참사 직후 직접 정보공개 및 분석(증거자료 2)을 통해 사회에 명백하게 알려졌던 내용입니다. 현대 이 지침이 2014년 7월 말에 와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의 지시로 안보 분야는 국가안보실이, 재난 분야는 안전행정부가 관장한다고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지침에서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의 위기관리 국정수행을 보좌하고

국가차원의 위기관리 관련 정보 분석, 평가, 종합 국가위기관리 업무의 기획 및 수행 체계 구축 등 위기관리 상황을 종합 관리 기능을 수행하고 안정적 외교 관리를 위해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가안보실장은 기존의 내용들을 모두 붉은 선을 그어 삭제하고 손 글씨로 국가위기관리 관련 대통령의 안정적 국정수행을 보좌한다고 불법 수정하였습니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에 따르면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은 대통령 훈령으로써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요청하는 절차, 그리고 법제처장이 심의 필증을 첨부해서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 절차, 그리고 다시 법제처장이 대통령재가를 받은 훈령안에 발령 번호를 부여하는 등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이전 정부의 국가안보실은 이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임의로 수정한 지침을 2014년 7월 31일에 전 부처에 통보하였습니다.

이처럼 불법적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의 변경은 세월호 참사 직후 정보공개센터의 문제제기와 그에 따른 언론보도로 정권에 대한 비판여론이 강하게 조성된 직후 자행되었습니다. 이는 2014년 7월 10일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회에 출석하여 ‘재난컨트롤 타워는 국가안보실이 아닌 안전행정부’라고 주장한 사실(증거자료 3)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비추어봤을 때 청와대에서 재난 컨트롤타워 기능 불이행에 대한 비판여론을 회피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공문서를 조작한 것이라 보여집니다.

3. 피고발인들 혐의의 불법성

「형법」 제123조(직권남용)에 명시된 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에 명시된 바,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의 혐의가 사실일 경우 피고발인 1 은 불법적으로 변경된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직접 변경하였거나 변경 하고 공공기관들에 통보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피고발인 1 이 직접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변경하였을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의 죄를 범한 것이며, 이처럼 불법적인 변경을 지시하였거나,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의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공기관에 통보하도록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의 죄를 범한 것입니다.

피고발인 2 는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으로서 지난 2014년 7월 10에 진행된 세월호 국정조사특위에 출석하여 재난 컨트롤타워가 국가안보실이 아닌 안전행정부라고 주장하였으며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의 불법적 변경이 이 발언 이후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감안하면 피고발인 2 가 이를 지시하거나 공모했을 개연성이 존재하므로 이 경우 역시 직권남용의 죄를 범한 것입니다.

4. 결론

우리나라 최고 행정기관인 대통령실은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관련된 법의 준수와 그에 따른 책임성이 타 공공기관들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현재까지 드러나고 있는 지난 정권 대통령실의 자의적인 밀실행정들은 한국 사회에 커다란 불신과 해악을 남겼음이 너무도 자명하며 그 피해는 모두 국민들이 고스란히 짊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도 지난 정권의 대통령실은 세월호 참사라는 국가적 재난에 대한 일말의 책임마저 면피하기 위해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변개하는 파렴치한 일이 발생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것입니다.

더구나 이번 사건은 나이 어린 국민들의 비극적인 죽음과 그에 따른 책임 여부를 우리 사회가 다시 확인하는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며, 또한 공공기관에 요구되는 일말의 책임성에 대한 국민들의 상식을 다시금 절망으로 바꾸어 버린, 우리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도저히 묵과되어서는 안 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부디 엄정한 수사를 통해 피고발인은 물론 추가로 있을 수 있는 관련자들까지 적발하여 엄격하게 처벌해 공직자들에게 공직윤리와 막중한 책임을 확인시키고 무너진 법절차들을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합니다.

증 거 자 료

1. 세월호 문건 관련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브리핑 2017년 10월 12일자 1부
2. <컨트롤타워가 없다? 해양수산부 위기관리 매뉴얼엔 국가안보실이 실질적 컨트롤타워로 명시!> 2014년 4월 24일자 정보공개·분석 1부
3. 경향신문, 청와대 김기춘 실장 “재난 최종지휘권 없다” 책임회피 발언, 2014년 7월 10일자 보도 1부

2017. 10. 17

위 고발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인)

소장 김유승

담당자 조민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